



제428 회국회(임시회)
제1 차보건복지위원회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잔식 기부를 위한 준수 사항 마련 〉

■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476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잔식 기부를 위한 준수 사항 마련	3

I. 개요

1.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47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신영대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5. 3. 31.
- (3) 회 부 일 : 2025. 4.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연평균 약 500만 톤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4,314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집단급식소의 잔식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기부하는 ‘잔식 기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잔식 기부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최대한 줄이는 차원에서 환경보호 효과를 지님과 동시에, 경제적 사유로 식품 구매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끼니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음.

참고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세종특별시 교육청의 경우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배식하지 않고 남은 음식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이에 현행법에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기부된 잔식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가 잔식의 기부를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규정
하여 안전한 잔식 기부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잔식 기부를 위한 준수 사항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집단급식소와 잔식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잔식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된 잔식은 당일 제공·섭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안 제6조의2 신설), 이를 위반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집단급식소”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u><신 설></u>	7. “잔식”이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되었으나 배식되지 아니한 상태의 식품을 말한다.
<u><신 설></u>	제6조의2(잔식의 기부)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잔식을 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제14조(과태료) <신 설>

시점을 기준으로 조리 후 4시간 이내일 것

2.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가 철저하였을 것

3. 식품이 부패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였을 것

4. 제공 전 잔식의 보관 온도, 보관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기부된 잔식은 조리한 당일 제공·섭취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리한 다음 날 제공할 경우 이를 제공하는 자는 재가열 등 위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의 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과태료) ①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잔식을 기부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

① (생략)	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 ----- -----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여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¹⁾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식품 및 생활용품을 개인·기업으로부터 기부받아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수급 탈락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라면·쌀·햇반·통조림·반찬류·장류 등 대상자가 원하는 식품 및 치약·샴푸 등 생활용품을 월 1~2회 지원하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²⁾을 운영하고 있음

- 최근 기부식품등 모집 현황을 보면 식품등의 모집 실적은 장부가액 기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기부식품등의 모집·관리 및 제공
2.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3. 그 밖에 기부식품등의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 기부식품등 모집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21	'22	'23	'24
합계	240,047	247,592	255,763	258,780
식품	189,743	199,147	213,037	216,351
생활용품	50,304	48,445	42,726	42,429

※ 식품·생활용품 모집실적은 장부가액(원가) 기준으로, '23년 기준 소비자금액 환산 시 4,260억원 상당으로 추정(장부가액은 소비자금액 대비 가공식품은 74%, 신선식품은 9.3%, 생활용품은 16.7% 수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 2024년 기준 주요 사업장³⁾으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전국푸드뱅크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17개소의 광역푸드뱅크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사업장 419개소가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운영되고 있음.

< 사업장 운영 현황 >

계	전국푸드뱅크 (협의회)	광역푸드뱅크 (시·도)	기초(시·군·구)	
			푸드뱅크	푸드마켓
437개소	1개소	17개소	288개소	131개소

※ 푸드뱅크는 이용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형태, 푸드마켓은 이용자가 편의점 형태의 매장을 직접 찾아와서 이용하는 형태를 말함.
자료: 보건복지부(2024년 기준)

□ 한편, 국가통계포털의 폐기물 발생현황 통계에 따르면,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2023년 537만톤에 달하고 있음.

3)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현황 >

구분	'21년	'22년	'23년
연간 총 발생량	543 만톤	555 만톤	537 만톤
1인당 발생량	105.2 kg	108.0 kg	104.7 kg

* 생활폐기물(가정, 발생량이 하루 300kg 미만인 소규모 음식점, 소매업 사업장)

+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하루 300kg 이상 배출하는 음식점과 소매업 사업장)

출처: 「폐기물 발생 현황」(국가통계포털(KOSIS), 환경부),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국가통계연구원)

□ 개정안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최대한 줄이는 차원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적 사유로 식품 구매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끼니를 제공하기 위하여,

집단급식소에서 조리되었으나 배식되지 아니한 상태의 식품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잔식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적절한 위생 및 관리 조치를 하려는 것임.

-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특정다수인(1회 5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하는 곳의 급식시설⁴⁾을 의미하며, 2023년 기준 46,376개소로 집계됨.

4)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 현행법 해석 상 기부식품에 해당하는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⁵⁾으로서 모든 음식물을 의미하므로 잔식의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식약처는 이미 ‘식품 기부과정에서 음식물 취급시 주의사항’으로서, 집단급식소에서 당일 조리하여 배식에 제공되지 않고 온도 관리가 된 음식물의 기부에 대하여 지침을 정하여 배포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⁶⁾를 통하여 잔식 기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법률에 잔식 기부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잔식 기부에 필요한 위생·관리 등 준수사항을 함께 규율함으로써, 안전한 기부 환경 조성 및 기부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 식품 기부과정에서 음식물 취급시 주의사항 >

□ 대상식품

- 집단급식소에서 **당일 조리하여 배식에 제공되지 않고** 온도 관리가 된 음식물
* 냉장 온도 5℃ 이하, 온장 온도 60℃ 이상

□ 취급시 주의사항

- 보관 관리

5)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경기도교육청조례 제7813호, 2023.10.11. 제정·시행),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 제2460호, 2024.6.28. 제정·시행),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 제9298호, 2024.7.18. 제정·시행),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충청남도교육청조례 제5817호, 2025.2.28. 제정·시행)

- 기부시설에 조리된 음식을 전달할 때 **교차오염이 없도록 뚜껑 있는 용기** 등을 사용해 **깨끗이 관리**
- **보관·운반**에 사용하는 용기(식품과 접촉하는 용기)는 **식품용 용기**를 사용
- **온장 유지** 식품을 **냉장**으로 기부하려는 경우에는 **신속히 5℃ 이하로** 식혀 냉장 보관

○ 운반 관리

- 교차오염이 없도록 용기 등을 위생적으로 취급
- 냉장·온장제품을 보존 및 유통할 때에는 일정한 온도 관리를 위해 해당 **온도 유지**가 가능한 **설비(차량·용기 등)**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 운반

○ 제공 시

- 기부식품을 나눠서 제공하는 경우 **위생적인 환경에서** 취급
- 냉장 유지 제품을 가열해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재가열하여** 제공
-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 **2시간 이내에** 섭취하도록 안내

자료: 보건복지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식약처 ‘식품 기부과정에서 음식물 취급시 주의사항’)

□ 「식품위생법」이 전반적인 식품의 위생 및 안전을 규정하고 있으나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주로 상정하면서 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⁷⁾하고 있는데, 특정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대하여 무상으로 기부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모호한 측면이 있고,

‘식품의 재사용 금지 원칙’⁸⁾ 등에 따르면이라도 잔식의 기부는 가능한

7)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8)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1.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③ 법 제88조제2항제1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4와 같다.

[별표24]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2.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서는 안 된다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인의 관점에서 잔식 기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⁹⁾,

잔식 기부에 관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기부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6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조리 후 4시간 이내’라는 요건을 기부 가능한 잔식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요건이 기부 가능한 잔식의 범위를 다소 엄격하게 한정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잔식은 당초 기부를 목적으로 조리된 것이 아니라 집단급식소에서 조리되었으나 배식되지 아니한 상태의 식품을 의미하며, 통상 조리 후 일정 시간 동안 배식을 위한 대기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에 더해 위생관리 조치 및 배송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고려할 경우, 조리 시점을 기준으로 4시간 이내라는 제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잔식 기부를 실질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기부가 집단급식소 인근 지역에 국한되는 구조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한편, 개정안 제6조의2제2항 단서에서는 ‘조리한 다음 날 제공할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데, 안 제1항제1호의 ‘조리 후 4시간 이내’라는

9) 조혜선, 이에지, ““추석에 만든 전 가져가실 분~” 무료 나눔 음식, 먹어도 팬찮을까“, 2024.9.17.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40916/130029444/1>
김기연, “학교 잔식 기부에 ‘제동’... 교육청 ‘난감’“, 2024.8.8., 대한급식신문 <https://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806>

요건과 배치되므로 법 집행 및 해석 상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부대상 잔식의 요건을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조리 후 4시간 이내’로 명시하기보다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기부과정에서 음식물 취급시 주의사항’과 같이 고시·지침 등에 위임하여 탄력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은 안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잔식을 기부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잔식도 식품이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01조제1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제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 포함)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조리·저장·운반 등을 할 때에는 위생적으로 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01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¹⁰⁾

10)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8조(집단급식소)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11.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이는 각각 개정안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되었을 것’, 같은 항 제3호의 ‘식품이 부패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였을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취지를 담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기부된 식품의 위생은 이용자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엄격한 관리 및 위생 조치가 필수적이고, 이러한 필수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개정안에 따른 잔식 기부는 생활이 어려운 자를 지원하는 공익적 성격의 행위로서 기부 활성화 측면에서 현행 제8조11)는 고의·중과실이 등이 없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해주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과태료의 부과는 잔식 기부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기부된 식품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시점을 기부자가 확인하기 어려움에도 ‘조리 후 4시간 이내 제공’을 과태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를 위반한 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1조(과태료의 부과대상) ① 법 제101조제1항제4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88조제2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민·형사상의 책임감면) ①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자(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를 제외한 다) 및 기부식품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제3조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인 경우

②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때에는 제공자·사업자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상의 과태료 처분 외에 별도의 과태료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잔식 기부의 요건으로서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조리 후 4시간 이내’, ‘조리한 다음 날 제공할 경우 재가열 등의 위생조치를 할 것’ 등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서 명확하게 규율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부활성화 측면과 더불어 식품 위생에 관한 기본법인 「식품위생법」의 과태료 체계와의 정합성을 함께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잔식 기부 활성화 취지에 공감하나, 현행 법령상으로도 잔식 기부가 가능함에도 별도 준수사항 신설은 신중 검토 필요

동 법률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가 목적으로 식품 안전 관련 내용은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고,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개정안 제14조 제1항)는 기존 처분(안전취급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에 비해 과도하며 잔식 기부를 저해할 우려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견 없음

- (교육부) 집단급식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잔식을 기부하는 경우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잔식 기부 문화를 확산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

잔식을 선의로 기부하려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현장에서 확인 어려운 위생관리 기준을 정하고 책임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한 동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외, 2개 교육청 및 4개 학교 등에서 수정의견을 제출하였고, 6개 교육청 및 27개 학교에서 개정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음.

- 수정: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등 2개 교육청과 수덕초, 오산초, 웅천고, 제주신광초 등 4개 학교 및 서울특별시교육정보건강안전진흥원
- 반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6개 교육청과 홍남초, 연무마이스터고, 천안신안초, 도고중, 일신초, 남천초, 선곡초, 아주초, 강일초, 온곡초, 자운초, 중원초, 미아초, 상일초, 신가초, 위례별초, 대모초, 송인초, 월촌초, 석관초, 대치초, 서강초, 송곡초, 홍은초, 장곡초, 구현초, 우암초 등 27개 학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잔식’이 현행법상 식품에 포함되므로 별도 정의 불필요, 온도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 제공시점을 기준으로 2시간 이내로 수정하고, 당일 제공·섭취 원칙 유지 필요
과태료 부과는 잔식기부 활성화 저해 우려로 삭제 필요(현행법상 안전취급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과 형평성 문제 우려)

문 의 처

02)6788-5497